#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 사 보 고 서

2024. 12.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11일, 진종오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 11. 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2024. 11. 21) 상정, 축조심사

제2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2024. 11. 25)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 11. 25)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 2. 제안설명의 요지

(진종오의원)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함. 또한, 체육계 인권침해 등을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 요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 요구에 대하여 기한 내에 처리 및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제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현실적으로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방지를 위해 책임자에 대한 징계요구 외에 제도개선 권고 등을 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며, 윤리센터의 징계요구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징계요구 하는 절차로 절차 지연 및 행정부담이 발생하고 있고, 중·경징계를 구분하지 않고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등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처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체육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치요구에 대한 결과를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평가, 보조금의 지급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감사, 권고, 기관경고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경우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단체에 직접 조치요구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 요구 시 비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지정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9)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현장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하며, 인권감시관의 명칭을 체육계 현장의 인권보호라는 사업의 취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인권보호관으로 변경하고, 신고자등이 동의한 경우 조사기록 등을 수사기관·징계요구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신고자 비밀보호 의무에 대한 예외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제18조의3제3항제4호, 제18조의4제3항, 제18조의10제3항).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전완희)

### 가. 현장점검 협조 및 체육계 통합정보시스템 관련 자료 요청

#### (1)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문체부장관이 '성폭력 등 체육계 폭력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3항 및 제5항 신설).

[ 개정안 조문 대비표 ]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8조의2(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 ①·② (생 략)<br><신 설> | 제18조의2(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 ①·② (현행과 같음)<br>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③ (생 략)<br><신 설>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br>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4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체육 |

| | |
|---|---|
| |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사유는 제외한다)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2) 검토의견

현행법에 따르면 문체부장관은 성폭력 등 체육계 폭력 방지를 위해 현장점검을 하여야 하고,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인적사항, 소속 이력, 수상 정보, 경기실적 및 징계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징계 이력 등에 관한 세부 인적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1].

개정안은 문체부장관에게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현장점검 협조 및 체육계 통합정보시스템 관련 자료 제출 요청권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문체부장관의 현장점검 및 체육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이 보다 내실화될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안은 타당해 보임.

---

1)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폭력 등 체육계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 8. 1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인적사항, 소속 이력, 수상 정보, 경기실적 및 제18조의13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징계 이력 등에 관한 세부 인적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나. ‘인권감시관’의 ‘인권보호관’으로의 명칭 변경

### (1)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인권감시관’의 명칭을 ‘인권보호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3항제4호).

[ 개정안 조문 대비표 ]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①·② (생 략)<br>③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br>1. ~ 3. (생 략)<br>4. 체육계 현장의 인권침해 조사·조치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u>인권감시관</u> 운영<br>5. ~ 7. (생 략)<br>④ ~ ⑧ (생 략) |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①·② (현행과 같음)<br>③ ----------.<br>1. ~ 3. (현행과 같음)<br>4. ---------- <u>인권보호관</u> -----<br>5. ~ 7. (현행과 같음)<br>④ ~ ⑧ (현행과 같음) |

### (2) 검토의견

현행법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사업 중 하나로 ‘체육계 현장의 인권침해 조사·조치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인권감시관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인권감시관’을 ‘인권보호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표] 인권감시관 활동 내역

| 연도 | 활동 내역 |
|---|---|
| 2022 | - 국가대표 후보선수 및 스포츠클럽 훈련지·합숙소 집중점검 총 93회<br>- 활동 결과보고서 「모두 함께 걸어온 스포츠 인권의 오늘과 내일」 제작 |
| 2023 | - 국가대표 후보선수 및 스포츠클럽 훈련지·합숙소 집중점검 총 14회<br>- 제1회 스포츠 인권 상생 포럼 개최(참석자 115명) |
| 2024 | - 제주지역 학교운동부 집중점검('24.6.~8.) |

*인권감시관: 선수 출신, 지도자, 학교 체육지도자 등이 위촉되며, 활동에 따른 수당이 지급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목적은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임에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현행처럼 '인권감시관'으로 부르는 것은 보호·지원대상자 등에게 부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으므로, 체육계 현장의 인권보호라는 사업의 취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인권보호관'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임.

## 다.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

### (1)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스포츠윤리센터 전·현직 종사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신고자 등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공개 또는 자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려는 것임(안 제18조의4제3항 단서 신설 등).

[ 개정안 조문 대비표 ]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의 신고) ①·② (생 략)<br>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 제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의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br>③ ----------.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18조의10(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 ①·② (생 략)<br>③ 스포츠윤리센터 및 제1항에 따른 시설에서 신고·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 제18조의10(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br>③ ----------. 다만, 신고자 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 검토의견

현행법상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법 제18조의4), 스포츠윤리센터는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또는 직권으로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법 제18조의5), 신고・상담 및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문체부장관에게 체육단체 책임자 징계요구 및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음(법 제18조의9).

또한,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자와 피해자 및 신고와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하 “신고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소속기관의 장, 피신고자 등에게 신고자등 보호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법 제18조의7).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가 수사기관에 고발, 체육단체에 징계요구 등을 할 때, 정보 공개 및 자료 제공 금지원칙을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수사 의뢰, 고발, 징계 요구 시 관련 조사기록 등을 제공 또는 공유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보도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 및 신고·상담·임시보호시설 종사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이후의 후속 조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개정취지는 타당해 보임.

다만, 안 제18조의4제3항이 정보 공개 범위를 신고자의 인적사항에 한정하는 것과 달리 안 제18조의10제3항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 및 신고·상담·임시보호시설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 자료 등 신고·상담에 관한 모든 정보가 제공 대상이 될 수 있음.

이에, 신고자등이 동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스포츠윤리센터가 다루는 사안의 위중함, 제공 동의한 정보의 범위의 모호성,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2차 피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2] '사건 조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공유

2) 유사 입법례

| 입법례 | 신고자 인적사항 | 업무 종사자의 비밀 |
|---|---|---|
| 부패방지 권익위법 |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0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공익 신고자 보호법 |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7조의2(자료요청 등)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자료나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u>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u>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공직자 윤리법 | 제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⑤ 누구든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비밀엄수)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문의 수정이 필요해 보임.

문체부도 개정취지에는 공감하나,「공무원 징계령」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절차 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 | | |
|---|---|---|
| 성폭력 방지법 | - | 제16조(비밀 엄수의 의무)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 제119조(비밀엄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 공무원 징계령 | - | 제7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br>1.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요구서, 혐의자·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br>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관련자·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br>3. 그 밖에 다른 기관의 경우에는 징계등 혐의 사실통보서 및 혐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br>⑥ 제1항·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단서 생략)<br>1. ~ 3. (생략)<br>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br>5.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br>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br>7. 관계 법규, 지시문서 등의 발췌문<br>8. (생략) |

체육단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3)]

3) <문체부 수정안> *제18조의9제4항 신설(안 제18조의10제3항의 단서 삭제)

| |
|---|
| ④ 스포츠윤리센터는 제3항에 따라 징계요구 등을 요청할 때는 징계권한을 갖는 체육단체에 그 징계 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br>1. 징계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br>2. 혐의자·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징계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

## 라. 조치요구 미이행 체육단체에 대한 불이익 등

### (1)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문체부장관의 체육단체에 대한 조치요구를 유형화하고,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단체에 직접 조치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며, 문체부장관이 체육단체에 징계유형을 구분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요구를 미이행한 체육단체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9제2항, 동조 제3항 단서 신설, 동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 개정안 조문 대비표 ]**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① (생략)<br>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어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등) ① (현행과 같음)<br>② ---------- 자에 대한 징계요구, 권고, 시정명령 등(이하 “조치요구”라 한다)을 할 ---. --- 조치요구를----------, 조치요구를----------. ---------- 조치요구----------. |

| | |
|---|---|
|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③ ---------- 조치요구----------.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단체에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직접 요구할 수 있다. |
| <신 설> | ④ 제2항에 따른 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징계 요구를 할 때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할 수 있다.<br>1. 선수에 대한 징계<br>가. 중징계 : 제명, 자격정지(10년 이하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출전정지(10년 이하의 기간으로 한정한다)<br>나. 경징계 : 견책<br>2. 지도자 및 선수관리담당자에 대한 징계<br>가. 중징계 : 제명, 해임, 자격정지(10년 이하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출전정지(10년 이하의 기간으로 한정한다)<br>나. 경징계 : 감봉, 견책<br>3. 심판에 대한 징계<br>가. 중징계 : 제명, 해임, 강등, 자격정지(10년 이하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출전정지(10년 이하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

| | |
|---|---|
| | 나. 경징계 : 감봉, 견책<br>4. 체육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br>가. 중징계 : 제명, 해임, 자격정지 (10년 이하의 기간으로 한정한다)<br>나. 경징계 : 감봉, 견책<br>5. 체육단체 직원에 대한 징계<br>가. 중징계 : 파면, 해임, 정직<br>나. 경징계 : 감봉, 견책<br>6. 운동경기부에 대한 징계 : 출전정지 |
| <신 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조치요구의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평가, 보조금의 지급 등에 불이익을 주거나 해당 평가 또는 보조금의 지급 등을 주관하는 기관 등의 장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요구할 수 있다. |
| <신 설> |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요구의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 검토의견

현행법상 문체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요청으로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체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함.[4)]

일례로,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원시・도체육회 등에 대해 문체부장관의 책임자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단체별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문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5)].

---

4)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상담 및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어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대한체육회 규정) 제1조(설치근거) 대한체육회는 정관 제43조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제22조(스포츠공정위원회 설치의무) 회원종목단체 및 회원시·도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규정 제38조와 회원시·도체육회 규정 제38조 및 이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7조(징계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그 대상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자 및 선수관리담당자: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지도자 또는 선수관리담당자로 한정한다),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2. 선수: 견책,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
3. 심판: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심판으로 한정한다), 출전정지, 자격정지, 강등, 해임, 제명
4. 단체 임원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임원으로 한정한다), 자격정지, 해임, 제명
5. 운동경기부(학교운동부 또는 직장운동부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출전정지

그런데 스포츠윤리센터는 징계 요구를 문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을 뿐 징계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은 해당 체육단체에 있어 실제 징계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징계 수위가 약한 등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및 징계요구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6)]

이에 개정안은, 문체부장관의 체육단체에 대한 조치요구 유형화 및 문체부장관이 징계유형을 구분하여 징계요구할 수 있도록 징계종류 유형화, 스포츠윤리센터가 문체부장관과의 협의 하에 체육단체에 직접 조치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조치요구를 미이행한 체육단체에 대한 불이익 근거 마련 등을 통해 문체부장관과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현재 문체부장관의 징계 요구와 체육단체의 징계 결과가 상이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 결과가 징계 요구한 징계사유의 양정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재검토를 공문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된 2020년 이래로 377건의 징계요구 중 체육단체가 징계 조치 결과를 보고조차하지 않은 경우가 43%(162건)에 달한다는 점, 그럼에도 현재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체육단체에 대해 별도의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6) 현재,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체육단체에 대한 문체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제도개선 권고 중,
현행 절차에 따르면 문서 수·발신 및 결정문 검토 등 행정절차로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요구 요청' 이후 '징계요구'까지 약 2주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됨,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징계 요구절차를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임.

**[표]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요구 및 체육단체의 미보고 현황**

| | 2020 (9.2.~) | 2021 | 2022 | 2023 | 2024 (~8.31.) | 계 |
|---|---|---|---|---|---|---|
| 징계요구*(건) | 3 | 46 | 69 | 137 | 122 | 377 |
| 미보고(건) | 0 | 2 | 9 | 54 | 97 | 162 |

* 장관이 직권으로 징계요구한 경우는 0건으로, 모두 윤리센터의 요청에 의한 징계요구임.
** ('20.8월~'24.4월) '중징계 사유'로 징계 요구한 188건 중 조치 결과가 경징계 33건(18%), 미회신 64건(34%)
(중징계 사유: 폭력, 성폭력·추행·희롱, 인권침해, 괴롭힘, 승부조작, 편파판정, 입학비리, 선거관련 비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다만, 안 제18조의9제4항과 관련하여, 중징계·경징계 등으로 구분하여 징계요구할 수 있음은 규정하되 대상별 세부 징계기준은 하위법령에 마련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고[7],

7) <유사 입법례>

| 법률(령)명 | 조문 내용 |
|---|---|
| 감사원법 | 제32조(징계 요구 등) ①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br>⑩ 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를 할 때에는 그 종류를 지정할 수 있다. 문책의 종류는 징계의 종류에 준한다. |
| 금융위원회 설치법 | 제41조(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① 원장은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br>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br>2. 이 법에 따라 원장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br>3. 이 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검사 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br>4. 원장의 시정명령이나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br>② 제1항에 따른 징계는 면직·정직·감봉·견책 및 경고로 구분한다.<br>* 은행,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

안 제18조의9제5항과 관련하여, 보조금의 지급 중단 기한 등 불이익의 상한을 규정하는 것이 체육단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8).

| | |
|---|---|
| | 중앙회,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
| 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 제7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⑥ 제1항·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

8) <유사 입법례>

| 법률(령)명 | 조문 내용 |
|---|---|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 제34조(시정명령) ① 위원회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제2조제10호라목에 해당하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있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행위를 한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해당 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정한 기간 내에 하도록 명할 수 있다.<br>③ 위원회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검토한 결과 제16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행위를 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소속되거나 고용된 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지정한 기간 내에 하도록 명할 수 있다.<br>1. 성희롱 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조치<br>2. 성희롱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br>3. 그 밖에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br>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도록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br>제35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①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술사업자 또는 사람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br>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4조제5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도록 통보한 자<br>2.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성폭력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도록 통보한 사람<br>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중단·배제의 기간, 정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별표2] 재정지원 중단·배제의 기간 및 정도에 관한 기준<br>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4조제5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도록 통보한 자 : 3년<br>나.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성폭력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도록 통보한 사람<br>1) 벌금형 : 3년<br>2) 1개월 이상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 4년<br>3)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 5년 |

##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임오경)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 8. 소수의견 요지

해당사항 없음

## 9. 관련 위원회 의견 요지

해당사항 없음

## 10. 기 타

없 음